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23. 03. 20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채용 또는 인사 관리를 위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한 경우
4. 기타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가족정보, 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상 및 징계이력, 교육이력, 연봉, 4대보험, 건강검진결과 등의 개인정보
2.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 관련 업무 수행  
가.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  
나. 선택항목 :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개인정보

####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회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단,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① 회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회사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는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14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대표이사에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회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분실·도난·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분실·도난·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17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8조(기타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회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회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제2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제20조제3항의 관리책임자(이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 제22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관기간)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개월 이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보유한다.

### 제2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

로 본다.

####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2.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제20조에 따른 안내판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25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

-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존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존재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존재확인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존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존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회사가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존재확인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존재확인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존재확인의 연기·거절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26조(개인영상정보의 삭제)**

- ① 제2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서에 의해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



을 지체 없이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범죄의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 대수: 2대
4.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문 주위
  - OA실 내부
5.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장 / 경영기획팀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7.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보관장소
  - 회사내 서버실
9.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승인 후 사내에서만 열람